

##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[ ] 재신청서 [ ]

※ 접수번호,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2쪽 중 제1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
처리기한	○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*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 신청시 에너지이용권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일자를 접수일로 보아 처리기한을 기산합니다. - 급여 수급 결정일이 에너지이용권 신청기간 내에 있는 경우 : 급여 수급 결정일 - 급여 수급 결정일이 에너지이용권 신청기간 외에 있는 경우 : 급여 수급 결정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일
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주택전화
	주소		휴대전화

### [ ] 에너지바우처

수급자구분 [ ] 생계급여 [ ] 의료급여 [ ] 주거급여 [ ] 교육급여

대상세대 [ ] 노인(65세 이상) [ ] 장애인 [ ] 영유아(7세 이하, [ ] 미취학) [ ] 임산부

[ ] 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자 [ ] 한부모가족 [ ] 소년소녀가정 [ ] 다자녀

세대원수 [ ] 1명 [ ] 2명 [ ] 3명 [ ] 4명 이상

가족사항	신청인과의 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동거 여부 (미동거사유)	전화번호 (집/직장/휴대폰 등)

주거형태 [ ] 다가구·다세대주택(1개의 주소에 2세대 이상 거주) [ ] 아파트·오피스텔(5층 이상, 관리소 존재)  
[ ] 연립주택·단독주택(1개의 주소에 1세대만 거주) [ ] 상업시설(상가·공장·비닐하우스 등)  
[ ] 숙박시설(여인숙 등)·다중생활시설(고시원 등) [ ] 종교·복지시설 등 그 밖의 주거형태

하절기 [ ] 가상카드 (요금차감) 전 기 (고객번호: , 전기 회사명: ) ( 동, 호)  
[ ] 요금미차감  
[ ] 실물카드

동절기 (이용권방식 택 1)  
[ ] 가상카드 (요금차감) [ ] 전기 ○ 고객번호: ( 동, 호)  
○ 전기 회사명: ( 동, 호)  
[ ] 도시가스 ○ 납부자번호: ( 동, 호)  
○ 도시가스 회사명: ( 동, 호)  
\* 에너지원(택 1) [ ] 지역난방 ○ 사용자코드: ( 동, 호)  
○ 지역난방 회사명: ( 동, 호)  
[ ] 미신청(하절기바우처만 신청(연탄쿠폰, 연탄전환 등))

예외지급 사전지급 [ ] 신청(에너지이용권 사용이 불가능한 주거형태 대상(고시원, 쪽방 등)) [ ] 미신청(해당없음)  
계좌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
계좌확인 ※ 위 계좌가 수급자 본인 계좌이며, 압류방지 계좌가 아님을 확인함 [ ]  
안내사항 ※ 해당 지급액은 본인 거주지의 에너지비용으로만 사용해야함을 확인함 [ ]

### [ ]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(당해연도 연탄보일러를 천연료보일러로 교체한 경우)

대상세대 [ ] 생계급여 [ ] 의료급여 [ ] 주거급여 [ ] 교육급여 [ ] 차상위계층

[ ] 노인(65세 이상) [ ] 장애인 [ ] 한부모가족 [ ] 소년소녀가정

전환형태 교체방식 [ ]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[ ] 지자체 지원사업 [ ] 기타( )

교체유형 [ ] 등유보일러 [ ] LPG보일러 [ ] 도시가스보일러 [ ] 기타( )

이용권방식 [ ] 실물카드

「에너지법」 제16조의3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1항, 제13조의5제3항·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권을 ([ ]신청, [ ]재신청)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인) 성명: 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과의 관계: 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)

담당 공무원(직권신청시):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제2쪽 참조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	--------

신청인 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: 대리인 신분증 사본,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</li> <li>2. 가상카드 선택 시 추가 제출서류(현 거주지에 해당하는 영수증 및 고지서에 한정합니다): 전기요금 영수증(고지서), 도시가스요금 영수증(고지서), 지역난방요금 영수증(아파트관리비고지서) * 아파트(공동주택) 거주자의 경우, 아파트관리비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며, 해당 거주자의 관리사무소 확인을 통해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고객센터(남부자번호 및 사용자코드 등)를 적어야 합니다.</li> <li>3. 장애인의 경우: 장애인 증명서(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</li> <li>4. 임신부인 경우: 임신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</li> <li>5. 영유아가 7세인 경우 : 관할 초등학교의 장이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승인한 서류(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</li> <li>6. 다자녀인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(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</li> <li>7. 연탄전환의 경우: (비연탄)보일러 설치·시공확인서</li> <li>8. 예외지급 사전지급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: 입실확인서, 실거주확인서 등 에너지이용권 사용이 불가능한 주거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수급자 본인명의 통장사본(압류방지 통장이 아닌 일반 통장)</li> <li>9. 「에너지법 시행령」 제13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: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(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</li> </ol>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</li> <li>2. 주민등록표 등본</li> <li>3. 장애인 증명서(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)</li> <li>4. 임신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임산부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)</li> <li>5. 영유아가 미취학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영유아가 7세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)</li> <li>6. 다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다자녀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)</li> <li>7. (비연탄)보일러 설치·시공확인서(연탄전환인 경우만 확인합니다)</li> <li>8. 예외지급 사전지급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예외지급 사전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확인합니다)</li> <li>9. 그 밖에 「에너지법 시행령」 제13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)</li> </ol>

**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**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\*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(대리인): (서명 또는 인)

**관계 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**

이 신청서를 접수한 관계 기관의 장이 「에너지법」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신청자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, 소득·재산·근로능력·취업상태에 관한 정보,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신정보·가족관계등록전신정보, 금융·국세·지방세, 토지·건물·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·출입국·병무·보훈급여·교정·건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하고, 해당 정보를 5년간 보유(에너지이용권 신청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)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본인(대리인 포함)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인): 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과의 관계: 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)

**안내 및 유의사항**

■ 신청인(대리인) 및 직권신청인의 범위

본인, 가족, 친족(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), 에너지이용권 담당공무원

■ 유의사항

1. 「에너지법」 제2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, 같은 법 제1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이용권을 판매·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2. 신청인란에는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등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에너지이용권을 수급받을 사람을 기입해야 합니다.  
\* 신청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에서 '대상자'로 지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.
3.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(연탄쿠폰 등)을 신청(예정)한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신청이 불가능하며, 신청했을 경우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.
4.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신청시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접수시점에서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내지제6호의 서류제출을 재차 요구할 수 있습니다.
5. 기타 방식으로 연탄보일러를 교체한 경우 직전년도에 연탄구입 또는 사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가 지원됩니다.
6. 예외지급 사전지급은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,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없는 경우(고시원, 쪽방 등)에 에너지이용권 전액 미사용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.  
\*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예외지급 금액 입금이 불가능하며, 일반 통장이 없을 경우 생계비 계좌 개설 후 예외지급을 신청 바랍니다.